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6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남인순 · 김남근 · 임미애
손명수 · 김현정 · 서미화
윤종균 · 전진숙 · 송재봉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치사 및 그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살해·치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등의 절차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동반자살’ 등으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해하기 직전에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제250조제1항, 제252조 및 제25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55조(제250조제1항 및 제25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3항”을 “제2조제4호거목 중 「형법」 제254조(제250조제1항, 제252조 및 제25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55조(제250조제1항 및 제25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거목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4호거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하. (생략) <u><신설></u> 4의2. ~ 11. (생략)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u>제4조제3항</u> ,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제250조제1항, 제252조 및 제25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55조(제250조제1항 및 제25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4의2. ~ 11. (현행과 같음)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 ----- <u>제2조제4호거목 중 「형법」 제254조(제250조제1항, 제252조 및 제25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55조(제250조제1항 및 제25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4조제3항</u> ----

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